

보도자료

2021. 3. 29.



양형위원회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

양형위원회 3/29(월) 제108차 회의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①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 ②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증인자로 반영하여 사고가 재발된 경우 가증처벌, ③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특별가증인자로 반영하여 사고 규모가 큰 경우 가증처벌 등 양형인자 정비
- 처음 설정하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최종 양형기준 의결: 환경범죄 유형별로 형량범위, 양형인자를 제시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여[가증영역을 '징역 10월-3년6월'을 '징역 2년-5년'으로 상향],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증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인자에서도, **종래 비판이 있던 합의 또는 공탁 관련 감경인자의 성격을 변경**[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증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
-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확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 무위반치사만 양형기준 설정(현행)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 무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포함) 모두를 양형기준 설정(확대, 다만 산업안전보건 의무반은 일부 포함)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1. 3. 29. 제10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함. 특히 환경범죄는 ①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② 대기환경 범죄, ③ 물환경 범죄, ④ 해양환경 범죄, ⑤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각 범죄 유형에 맞는 양형인자 표를 설정함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1. 7. 1. 시행 예정)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현행법 제167조, 구법 제66조의2)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포함	설정 범위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현장실습생 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현행법 제168조, 제169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일부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함

- 설정 범위 포함 범죄 예시: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 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형량범위 관련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징역형): 7년 이하 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수정 양형기준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5년	2년-7년	2년-10년6월	3년-10년6월
기존 형량범위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10월-5년3월	10월-7년10월15일	상습 가중 규정 없음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다수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전제로 도출한 형량범위

*** 5년 내 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였고,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서는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형량범위에 포섭함

[양형인자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4개 제시
-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여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기업범죄 양상을 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조직적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두 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하여,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및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

우'를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함

② 『환경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1. 7. 1. 시행 예정)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범죄의 실제 성격, 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8개 법률[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② 대기환경보전법, ③ 물환경보전법, ④ 해양환경관리법, ⑤ 폐기물관리법,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⑦ 하수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등 8개 법률] 중 다음 기준에 따라 앞의 6개 법률[① 가축분뇨법, ② 대기환경보전법, ③ 물환경보전법, ④ 해양환경관리법, ⑤ 폐기물관리법, ⑥ 건설폐기물법 등 6개 법률]위반만을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함

※ 양형기준 설정대상 포함 기준

- 법정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 개별 환경관계법상 처벌 규정의 법정형(징역형)은 '7년 이하'가 가장 높은 수준임. 그 밖에 죄책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법정형이 높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낮음
- 실제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범죄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
 - 신고 사례가 없는 범죄는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신고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 범죄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행위 태양 및 죄질 고려
 - 환경범죄는 대체로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중간배출 등 직접적 환경침

해행위, ②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설치·영업행위, ③ 기타 행정명령 위반 행위 등으로 분류됨

- 대체로 ①>②>③의 순으로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시 ①과 ②는 포함하되 ③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대유형 분류

- 개별 환경관계법의 체계에 따라 ①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② 대기환경 범죄, ③ 물환경 범죄, ④ 해양환경 범죄, ⑤ 가축분뇨 범죄로 분류
- 건설폐기물 범죄는 세부 범죄 유형이 폐기물 범죄와 거의 일치하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폐기물 범죄와 함께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범죄 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

[형량범위 관련 사항]

○ 형량범위 결정 기준

- 양형실무 조사 결과,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 등을 고려
- 선고 사례가 부족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는 동일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 양형기준 형량범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7년 이하 징역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5년 이하 징역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년 이하 징역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년 이하 징역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이하 징역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양형인자 관련 사항]

- 양형인자 주요 특징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 반영하여, 환경오염 정도를 특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둠. 조직적 범행 양상을 떨 수 있는 환경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
- 단속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원상회복 노력 촉구

③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1. 7. 1. 시행 예정)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대유형 분류

- 기본적 구성요건(일반적 기준)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의 2개 대유형으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각 구성요건대로 별개 소유형 분류

[형량범위 관련 사항]

○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6월	4월-1년	8월-2년

○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